

# 서울특별시

우편번호 100-744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 전화(02)3707-9793/4 / 전송 3707-9809  
 처리부서 : 주차계획과(서소문빌딩 제1동 2층) 과장 권혁소, 담당 신만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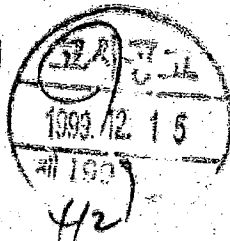
문서번호 주차91110-1A76

시행일자 1999. 12. 15

(경유)

수신 내부결재

참조



보존기간	3년	시 장	
공개여부	공개		
주차계획과장	전결		
		법무담당관님 사필	
기안자	신만철	민영주차팀장	협조
심사자		실사일	

제목 **훈련원공원 주차장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용도변경)와 관련한 사업기간 변경인가**

1. 상건 제616-1087('99.12.11)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시에서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건설·운영중인 훈련원공원 주차장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인 쌍용건설(주)로 사업기간 연장 승인요청이 있어 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에 따른 사업기간변경인가를 하고, 도시계획법 제26조에 의거 그 내용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사업개요

- 사업명 : 훈련원공원 주차장 건설
- 위치 : 중구 을지로5가 40-3
- 시설규모 : 지하5층 924대(부대시설 용도변경 16,852.91㎡)

나. 변경내용

구 분	변경전	변경후
사업기간	'99. 9. 15~'99.12.15	'99.12.15~2000. 2.15

○ 변경사유

주차장시설물에 대한 자체 방재전문기관의 별도 방재진단을 실시하여 미비된 사항이 있을 경우 공사시 추가로 반영하고자 추진중인 바, 방재진단 실시 에 필요한 사업기간 연장 필요

다. 인가조건

방재전문기관의 방재진단 결과에 따라 주차시설물을 보완하고 준공  
검사시 결과보고 할 것. 끝.

(제 2 안)

수 신 : 송파구 신천동 7-23 쌍용건설(주) 대표이사 사장 장동립 귀하

제 목 : 훈련원공원 지하주차장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인가

1. 쌍건 제616-1087('99.12.11)호와 관련입니다.

2. 귀사가 우리 시에 신청한 훈련원공원 지하주차장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에 따른 사업기간 요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  
계획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에 따른 사업기간 변경 인가를 하니 주차장설치공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내용

구 분	변경전	변경후
사업기간	'99. 9. 15~'99.12.15	'99.12.15~2000. 2.15

(제3안)

수 신 : 중구청장

참 조 : 건축, 교통지도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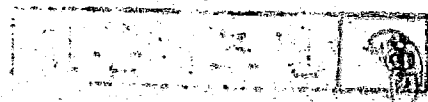
제 목 : 훈련원공원 지하주차장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에 따른 사업기간  
변경인가 통보

1. 쌍건 제616-1087('99.12.11)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시에서 민자유치사업으로 건설하여 운영중인 훈련원공원 지하주차  
장사업자로부터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에 따른 사업기간 변경 요청이 있  
어 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에 따른 사업  
기간 변경인가 하고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내용

구 분	변경전	변경후
사업기간	'99. 9. 15~'99.12.15	'99.12.15~2000. 2.15



# 서울특별시

(제3안)

수신 홍보담당관

제목 시보개제의회

아래와 같이 시보개제를 의뢰하오니 개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제구분 : 고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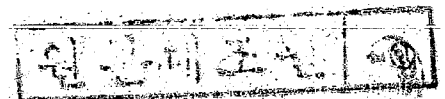
나. 개제전명 : 도시계획사업(주차장) 실시계획 변경인가

다. 법적근거 :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6조

라. 개제희망일 : 1999. 12.

따로붙임 : 고시문 2부, 끝.

# 주차계획과장



서울특별시고시 제1999-42호

9시 실시	1999. 12. 11	제 42호
담당자	허정/정영국	범우/김달환
홍정민	김정	구본영

서울특별시고시 제1999-296호('99.9.20)로 도시계획사업(주차장) 시행허가된 훈원원공원주차장 건설공사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변경 인가에 따른 사업기간을 변경인가하고, 같은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9년 12월 일

## 서울특별시

### 도시계획사업(주차장) 실시계획 변경인가

#### 가. 변경내용

구 분	변경전	변경후
사업기간	'99. 9. 15~'99.12.15	'99.12.15~2000. 2.15

나. 기타 사업대상지의 위치, 사업의 종류 및 명칭과 도시계획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수용 또는 사용 토지명세와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의 권리인의 주소·성명은 변동사항 없습니다.

다.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교통관리실 주차계획과(전화 : 3707-9794)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